##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8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권향엽·오세희·서영석

염태영 • 문진석 • 전진숙

조계원 · 복기왕 · 채현일

장종태 · 김남근 · 박희승

주철현 · 임미애 · 허성무

김 윤 • 윤건영 • 이병진

박해철 • 정준호 의원

(2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 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 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법률 제 호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신고하여야 한다.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신고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다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중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중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중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연한 보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입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양자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12. (생략)

③ (생 략)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등 보험가입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
- 4. ~ 1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